

11.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

* 이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(지방농촌지도관 유수형 031-229-5871)입니다.

농업인의 영농경험과 영농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및 현장 실용화기술을 농업인 주도하에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

가. 사업 현황

□ 추진방향

- 농·축산물 생산주체인 농업인 주도로 현장에서 실용화 가능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현장 애로기술과 문제점 해소를 통한 농·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기술개발
-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장·연구소 등과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 적응시험 등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

□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5조(공동연구개발) 제1항 ~ 3항, 농촌진흥법시행령 제5조 (공동연구대상사업) 제1항 ~ 제2항 등

□ 지원대상 분야

-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
 - 식량작물, 원예작물, 축산, 농촌자원 및 농식품 가공,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
- 중앙단위 시험·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
-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 과제
- 농업용 기자재 개발,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

□ 주요사업내용

- 사업비 : 과제당 최대 30백만원 이내
- 연구기간 : 1 ~ 2년
- 참여자격 :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와 협동으로 새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농업인

※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 부서와 협동으로 추진

나. 사업 추진 요령

□ 사업추진절차

<p>사업계획서 작성 (연중 수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업인이 직접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 협조(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)
↓	
<p>과제 신청·접수 (연중 수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·접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및 계획서 검토·보완
↓	
<p>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(사업전년도 12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촌진흥청(사업안 확정, 지도기관 시행), 도원, 시·군 농업기술센터(홈페이지 등에 공고) * 농촌진흥청은 30일 이상 과제 신청 공고(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)
↓	
<p>신청 과제 평가 및 심사 (1차, 도농업기술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1차 평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사·중복과제는 제외 -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(평가위원 1명이라도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)
↓	
<p>신청 과제 평가 및 심사 (2차, 농촌진흥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촌진흥청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1차 평가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차 평가 실시(공개평가) ◦ 농촌진흥청은 평가 및 심의 완료 후 과제 확정
↓	
<p>과제의 확정·통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촌진흥청은 선정된 과제를 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

협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업인 및 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농촌진흥청 협약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서 제출(농업안센터 → 도 농업기술원 → 농촌진흥청) * 도원과 농촌진흥청간 실무검토 및 계획서 보완 -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약 체결(단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약할 수 있음)
-------	--



연구개발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개발관리기관 계좌로 연구개발비 입금 * 기술개발관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
----------	---



연구과제 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의거 연구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의 비목간 20% 이상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(단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음) - 기자재 등 물품구매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시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 담당자와 농업인이 공동 검수 - 사업비 집행서류는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 ◦ 연구책임자(농업인)는 연구개발 시험일지를 작성 비치
---------	---



현지기술 지원 (연구 진행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술개발관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(농업인)의 연구과제 수행 기간 동안 필요시 기술지원(현장지원반 구성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 기술원 단위 전문가의 현지 기술 지원 - 농촌진흥청은 총괄관리책임자 요청시 수시로 기술지원 실시 ◦ 농촌진흥청,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 수행 중에 현지기술 지원반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
----------------------	--



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	계속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는 당해년도 협약기간 종료 전 공개평가 실시(내·외부 전문가 그룹 구성) - 연구성과가 불량한 과제는 연구중단 및 참여제한 조치
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



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	완료과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◦ 연구개발 종료전 공개결과평가 실시 ◦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록 및 제출 * 최종보고서는 농촌진흥청, 도 농업기술원에 각 1부 제출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



연구개발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부정적 집행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(단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 부여) *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에서는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여 집행
----------	---



연구성과의 활용·보급 (연중 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최종보고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게재 ◦ 연구성과 홍보 및 현장적용(농업인, 지도기관 등) ◦ 시·군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에서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부터 5년간 매년 연구성과 활용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◦ 현장 파급효과, 실용성이 높은 우수과제는 시범사업화 적극 지원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기 타

- 2012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